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 고용·노동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개인조사표

조사기준기간: 2021. 6월 급여계산기간
조사실시기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조사표 서식은 고용노동통계시스템(<http://laborstat.moe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 번호	사 업 체 고 유 번 호				사 업 체 규 모	산 업 분 류 번호	근로자추출률		지 역 번호
	※	※			※	※	※	※	※
							%	%	

※ 위 항목들은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기재합니다.

D.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앞장의 [B. 사업체 인력현황]에서 기재된 추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자를 고용형태와 성별로 임금대장(또는 근로자 명부)에서 고르게 선택한 후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일련 번호	2. 고용형태	3. 사번 (또는 성명)	4. 성별	5. 학 력	6. 출생 년월	7. 입사 년월	8. 경 력 년 수	9. 근 무 형 태	10. 고용계약 기 간	11. 직종				12. 근로일수		13. 근로시간			14. 임금 산정 기준	15. 임금기준액 (단위: 천원)	16. 2021년 6월 급여액(단위: 천원)				17. 전년(2020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단위: 천원)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연간 합계(사법)	18. 사 회 보 험 가 입 여 부				19. 부가 금부	20. 노동조합 가입여부	비고		
										(1)업무 내용	(2)직업분류 코 드	(3)직군(사법)	(4)직급(사법)	(1)소정 실근로 일수	(2)휴일 실근로 일수	(1)소정 실근로 시간	(2) 초과실근로 시간	(2-1. 휴일 실근로시간			(1) 정액급여				(2) 초과급여										
										1) 기본급	2) 통상적 수당	3) 기타 수당	(1) 고 용 보 험	(2) 간 강 보 험	(3) 국 민 연 금	(4) 산 재 보 험	(1) 상 여 금	(2) 퇴 직 연 금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② 자택/ 가내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용역근로자 ⑤ 일일근로자 ⑥ 단시간근로자 ⑦ 기간제근로자 ⑧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⑨ 정규직근로자		①남성 ②여성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초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출생년월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기준)	최초입사 년월을 기재합니다	① 1년미만 ② 1년이상 ~2년미만 ③ 2년이상 ~3년미만 ④ 3년이상 ~4년미만 ⑤ 4년이상 ~5년미만 ⑥ 5년이상 ~10년미만 ⑦ 10년이상	전임제 (Full time) ① 고대제 하지 않음 ② 2교대제 ③ 3교대제 ④ 격일제 단시간제 (Part time) ⑤ 단시간제	① 1개월이하 ② 1개월초과 ~6개월이하 ③ 6개월초과 ~1년미만 ④ 1년 ⑤ 1년초과 ~2년이하 ⑥ 2년초과 ⑦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행하는 업무 중 난이도와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을 사업체조사표 뒷면의 직업세분류 명칭보다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한국고용직업 분류표(사업체 조사표 뒷면)를 참조하여 해당분류 코드를 기재합니다 *직업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 내용만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정규직만 기재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직급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직군별 해당 근로자의 직급명을 기재합니다 *직급명은 사업체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규정상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 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연정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합계를 기재합니다	초과실근로 시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① 시간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⑤ 연봉제 ⑥ 기타 * 시간급의 경우 시간당 임금액을, 연봉제의 경우 1년간 기본연봉 총액 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를 말합니다	14항 임금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기준액 (만근 기준 기본급)을 기재합니다 *⑥기타'의 경우 기재할 수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기본임금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수당을 기재합니다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기재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020년 1년간 지급된 고정상여금(근로 계약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성과급과 변동상여금(경영실적 등에 따라 시후에 확정되는 상여금·성과급)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020년 1년간 지급된 고정상여금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고정상여금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 고 용 보 험 ① 가 입 ② 미 가 입	(2) 간 강 보 험 ① 가 입 ② 미 가 입	(3) 국 민 연 금 ① 가 입 ② 미 가 입	(4) 산 재 보 험 ① 지 급 (예 정) ② 미지 급 (예 정)	(1) 상 여 금 ① 가 입 ② 미 가 입	(2) 퇴 직 연 금 ① 가 입 ② 미 가 입	① 가입 ② 가입안함 ③ 자격없음 ④ 노조없음	지방고용 노동관서 에서 작성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년 월	년 월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일	일	시 간	시 간	시 간	1, 2, 3, 4, 5, 6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백 만 천 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5																											

용어해설 및 조사표 기재요령

- 본 조사는 2021년 6월 급여계산기간(6.1~6.30. 이거나 월력상 6월이 16일 이상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표의란(지방관서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번호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재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조사표

3항. 주요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최종 주요 생산품이나 사업내용을 기재하되, 생산액 또는 투입노동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생산품명 중 외국어나 특수한 품명으로 이해하기 애매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PLC(프로그램내장 컨트롤러), 완구(플라스틱 완구), 판상엽(수출용 담배 1차 가공품) 등 입니다.

14항. 고용형태별 추출근로자수

본 조사표에 기재한 조사대상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아래표의 추출률 및 추출방법에 의거 각각 추출합니다.
(예시) 귀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수는 800명이고 그 중 정규직근로자는 600명, 비정규직근로자는 200명(파견근로자 150명, 기간제근로자 50명)인 경우,
추출률은 정규직이 600명(이므로 규모(500~999인) 정규직 추출률 33%, 비정규직은 200명이므로 규모(100~299인) 비정규직 추출률 80%,
추출근로자수는 정규직 근로자 198명(600명×33%), 비정규직근로자 160명(파견근로자 120명(150명×80%) + 기간제근로자 40명(50명×80%))를 추출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반올림적용).

구분	규모	추출률	구분	규모	추출률
정규직	1~29인	100%	비정규직	1~29인	100%
	30~99인	80%		30~99인	100%
	100~299인	50%		100~299인	80%
	300~499인	33%		300~499인	67%
	500~999인	33%		500~999인	50%
	1,000~4,999인	20%		1,000~4,999인	33%
	5,000인 이상	10%		5,000인 이상	10%

추출률	추출방법
100%	전체근로자가 조사대상
80%	임금대장에서 순서대로 네 사람 뽑고 한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5명 중 4명 추출)
67%	임금대장에서 순서대로 두 사람 뽑고 한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3명 중 2명 추출)
50%	임금대장에서 순서대로 한 사람 뽑고, 한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2명 중 1명 추출)
33%	임금대장에서 순서대로 한 사람 뽑고, 두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3명 중 1명 추출)
20%	임금대장에서 순서대로 한 사람 뽑고, 네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5명 중 1명 추출)
10%	임금대장에서 한 사람 뽑고, 아홉 사람 건너 뛰는 방식으로 추출(10명 중 1명 추출)

- ※ 추출근로자수(조사근로자수)
상기의 추출률에 의거 선정되어 개인조사표에 기재될 조사근로자수를 말하며,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개인조사표

3항. 사번 또는 성명: 내용검토를 위한 보조자료로만 활용되고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4항. 학 력: 정규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졸 이하는 초등졸, 중졸 및 무학자를 포함하며, 대학원졸 이상은 석사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를 포함합니다.
단, 중퇴자는 차하급학교 졸업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퇴는 중졸입니다. 또한 공민학교, 전수학교 등은 학력인정 정도에 따라 해당 학력에 표시합니다.

7항. 입사년월: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 (1)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입사년월에 포함합니다.
- (2)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입사년월에 휴직기간을 더한 연월을 입사년월로 기재합니다.
- (3) 해고(또는 퇴직) 후 동일 기업체에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입사년월로 기재합니다.
- (4)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을 입사년월로 합니다.
단, 기업의 명의 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해고, 재고용의 수속이 행하여져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최초 입사년월을 기재합니다.

8항. 경력년수: 조사 기준일 현재의 업무내용을 수행한 기간을 말하며 경력년수의 산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다른 사업체에서 종사한 동일업무의 경력년수도 모두 포함되나, 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 (2)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견습기간은 포함하며, 자동차운전기사, 간호사 등의 경우처럼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은 면허 취득 후 실제로 그 직종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년수로 합니다.

9항. 근무형태

고용계약 시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은 제외)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로 분류합니다.
전일제(Full time):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정규적인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 사이의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전일제』에 해당되며, 경비, 공장가동 등 격일제 근무 또는 2~3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전일제』에 해당됨
단시간제(Part time):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자
※ 파트타임어,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전일제근로자와 근로시간이 동등하다면 『전일제』로 분류. 단, 일거리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는 『단시간제』로 분류함

10항. 고용계약기간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근 체결한 고용계약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제근로자는 1~6번 항목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와 특별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정한(약속한 또는 계약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

11항. 직 종

- (1) 업무내용
조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2) 직업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해당코드번호(4자리수)를 기입하되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2항. 근로일수

당해 근로자가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기재하며,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한 경우 1일로 간주하고 소정실근로일수와 휴일실근로일수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소정실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2) 휴일실근로일수: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13항. 근로시간

- (1) 소정실근로시간: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
※ 1개월간을 총계하여 1시간미만의 단위가 있는 경우 30분이상은 절상하고 30분미만은 절사
- (2) 초과실근로시간: 임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교대제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교대제의 경우는 주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음
- (2)-1. 휴일실근로시간: 초과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15항. 임금기준액: 임금산정기준에 따른 기준액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만근 기준 기본급을 기재합니다.

※ (예시) ① 시간당'은 시간당' 임금액을 '⑤ 연봉제'는 기본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기재합니다. 다만 '⑥기타'의 경우 기재할 수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16항. 2021년 6월 급여액: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된 월급여액을 말합니다.

- (1) 정액급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를 말합니다.
 - 1) 기본급: 6월 급여계산기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기본임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1개월분 기본임금이며 수당은 제외됩니다.
 - 2) 통상적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기재합니다.
 - 3) 기타수당: 통상적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기재합니다(연월차수당, 주휴수당 포함).
※ 연 · 월차수당을 적치해서 지급하는 경우 적치한 기간(예: 6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2) 초과급여: 소정근로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당해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어)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나 실제로는 6시간을 근로한 경우
→ 소정실근로시간 4시간, 초과실근로시간 2시간으로 기재하되 초과급여는 지급여부에 따라 기재합니다.

17항. 전년(2020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 정액급여(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및 초과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1년간 지급된 고정상여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사전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된 상여금 · 성과급)과 변동상여금(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는 상여금 · 성과급)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8항.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각각에 대하여 실제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1번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2번으로 기재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제외

19항. 부가급부 지급 / 가입여부

당해 사업체에서 상여금(보너스, 정근수당, 기말수당, 성과급 등)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경우 1번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 1번으로 기재합니다.

20항. 노동조합 가입여부

1~4번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